

제 2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3.6.24(월) 10:00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1. 제안자 : 고령군수

## 2. 제안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3. 주요내용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 등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안 제4조)
- 협동조합 등의 지원계획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
-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안 제8조)
-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안 제10조)

## 4. 관계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5. 검토의견

○ 허임량 전문위원입니다.

○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협동조합의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부터 안제8조까지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계획에 관한 지원 위원회의 기능과 협동조합의 지원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0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2012.12.1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직으로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안경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뒷 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지며,

-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